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etho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raining Center

김지희(Kim, Ji-hee)** · 이영학(Lee, Young-hak)***

1. 머리말
 - 1) 연구배경
 - 2) 선행연구 검토
2. 무형문화유산과 전수교육관의 이해
 -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 2) 전수교육관의 개념과 현황
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과 기록관리 현황
 - 1)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유형
 - 2)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특징
 - 3)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 현황
4.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방향
 - 1) 행정기관 주도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록화
 - 2) 전승자·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
 - 3)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기록화
 - 4)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리는 기록화
 - 5)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록화
5. 맺음말

* 본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2018)을 요약·수정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교신저자).

■ 투고일 : 2018년 3월 27일 ■ 최종심사일 : 2018년 3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4월 5일

〈초록〉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무형문화재 기록화, 전수교육관 기록화, 전수교육관 기록관리

〈Abstra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formless. It's of importance to preserve heritage in line with society drastically being transformed. It's passed down by human being. It is, on the other hand, impossible to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lely based on memory, for it's changed in

succession. Thus, it be archived to pass down.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state of affair relat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s, examined the shortages thereupon. Furthermore, Training center should be in charge of documentation for a solution.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ttributed to the top-down documentation system by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viewpoint of different successors,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s should be of different aspects of community history.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ich are convergent to the Regionality, tendency of variation, transmission, can be magnified when documentating. Finally, Training center is going to play a major role being vitalised.

The recor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d policie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highly complicated sinc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pened and the law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acted with its recognition attracted. Therewith this study wishes to see a cornerstone of record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laying stress on training center in which educations and pass-dow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lively achieved.

Keywords : Documentation Metho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cor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cord management of training center

1. 머리말

1) 연구배경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형태가 없기에 무형문

화유산은 보유한 사람이 실연할 때에만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사람에 의해서 전승된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문화, 역사의 상호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하기에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고도 불린다(아태무형유산센터, 문화재청 2010, 6).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무형문화유산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보존하기 어렵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록물이 없는 상태로 전승자나 보유단체가 후대로 전승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면 무형문화유산은 단절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3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 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자 중국 내에서 ‘단오의 원조 논쟁’이 불거졌고, 중국이 조선족 농악무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자 국내에서는 농악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경향신문 2009). 인도네시아에서는 천연염색 법인 바틱을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자 바틱을 공유하고 있던 주변국에서 반발이 있었다. 이 같은 갈등이 빈번해지자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하였고, 2015년 무형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기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문화재보호법」의 포괄적인 관리 하에 유형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동일한 방향과 목표를 가졌다. 독립적인 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특성에 보다 적합한 관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의 정책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2013년 10월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하

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기록보존, 교육, 전승지원, 공연·전시 사업 등 무형문화유산에 관련한 복합적인 기능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유산 기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 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해서 관련 기록물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한다.”고 명시하였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립무형유산원 또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선도적인 아카이브 운영을 전략과제로 잡고,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체계적 수집하고 보존 처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듯 현재는 법을 제정하고, 담당 기관을 설립하는 등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역시 중요하지만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을 하향식으로 기록화하기에는 시간·예산·인력의 한계가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기에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역시 행정기관에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거점으로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였다. 전수교육관은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지를 중심으로 건립된 안정적 전승 활동 공간으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와 보유단체가 후계자를 양성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전통문화를 보급·선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물과 기록관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전수교육관을 기반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대한 연구는 기록학뿐만 아니라 민속학, 문화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이루어진다. 기록학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대한 연구는 2008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사한 연구로 연극, 무용 등 문화자원의 기록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은 예술 기록, 공연 기록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그렇기에 예술 기록, 공연 기록 등과 같은 문화자원의 기록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에 관해 거시적으로 다룬 연구와, 무형문화유산의 구체적 종목이나 특정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대해 미시적으로 다룬 연구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관한 거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수진(2006)은 무형문화재 원형의 기록에 집중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재 기록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기록화 사업의 목적이 홍보와 교육이기에 원형보존이라는 애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재필(2010)은 무형문화재 기록 보존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주도의 기록 보존에서 벗어나 기록 주체를 다원화시켜야 하며, 기록 보존 방법을 효율적으로 진행함과 더불어 활용을 위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숙경(2010)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록화 사업을 토대로 무형문화재의 영상, 사진 매체별 기록 방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재 기록화에서 무형문화재 종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임예림(2011)은 무형문화재 기록물의 의미를 정의하고, 무형문화재의 기록물관리와 국내, 해외의 기록물 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기록화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2016)은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의 제정된 법에서 이전의 법과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지를 밝히고, 국립무형유산원과 국립국악원 등의 현재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현황을 분석하였다.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대해 거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와 같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큰 변화였던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체적 종목이나 특정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개 현황 기록화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생 기록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무형문화유산의 구체적 종목이나 특정 지역의 특색에 집중하고 있어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방안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장혁(2008)은 중요무형문화재 중 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기록 가치와, 기록 방법, 매체,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승자 소장 자료의 수집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전승자 소장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연구는 전수교육관 내의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일부 참고할 수 있다.

권소현, 김익한(2010)은 기존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중요무형문화재 13호 강릉단오제의 기록화 방안을 다루었다.

백주현, 김순희(2010a)는 16개 시·도무형문화재 기록화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시·도무형문화재의 기록화가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각 형태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백주현, 김순희(2010b)의 후속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시·도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방안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하나(2015)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인 은산별신제의 기록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존 은산별신제 기록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기록물 활용 방안으로 은산별신제 기록 콘텐츠 제작과 은산별신제 전수회관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인 전수교육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활용방안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2. 무형문화유산과 전수교육관의 이해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일까?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 중 어느 범위까지를 무형문화유산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유네스코 협약과 한국의 법을 참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한국 무형문화유산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의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술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¹⁾을 말한다. 공동체와 집단, 개인이 문화유산이라 인식해야 문화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공예품과 문화 공간 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본 것이 그 특징이다.

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2003,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한국 법에서의 명칭은 ‘무형문화재’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부터 2015년 까지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다.²⁾ 2015년 무형문화재의 독자적 법률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한국은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나누어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으로, 원래는 ‘중요무형문화재’였던 명칭이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바뀌었다. 2018년 기준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138건이다(문화재청 2018b, 1). 시·도무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며 기존의 ‘시·도지정문화재’라는 명칭이 ‘시·도무형문화재’로 바뀌었다. 2018년 기준 시·도무형문화재는 548건이다(문화재청 2018b, 36).

2) 「문화재보호법」[시행 2015.8.19.] [법률 제13291호, 2015.5.18., 타법개정,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문화재를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한다. 유형문화재의 개념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전승체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은 주로 사람에 의해 전승된다.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이수자, 전수교육조교를 거쳐 보유자에 이른다.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를 ‘전승자’라고 통칭한다.³⁾ 전승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이어나가는 중심이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전승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정액의 전승 지원금과 전수교육관의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법」 제28조 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공개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흔히 구전심수(口傳心授)라 한다. 말로 전하여 주고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뜻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배도록 가르침을 이르는 말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할 때에는 교재 없이 말과 기술로 전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보유자에게 전수교육권한이 집중되어왔다. 이수자 양성과 전수교육조교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 중심의 전승 구조는 문화 권력화 현상을 심화했다. 또한 폐쇄적 전승 구조에서 비롯한 피라미드 구조 고착화 등은 전승 구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3) 보유자 중에서도 ‘명예보유자’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유자를 말한다. 인간문화재라고 통용되는 단어는 보통 보유자와 명예보유자를 뜻한다.

(문화재청 2017, 40).

한편,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한 무형문화유산 단절이 우려된다. 2016년 기준으로 전승자는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전승자의 전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의 대부분 이수자와 전수 장학생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60대 이상 비중 92%, 국가무형문화재 135개 종목 중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은 37개로 27%에 달한다(문화재청 2017, 11). 이와 같은 상황은 전승단절 우려를 낳는다. 전승체계와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무형문화유산 기록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전수교육관의 개념과 현황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였다. 전수교육관(傳受教育官)이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는 공간이다. 원래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국가 및 시·도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하여 지금은 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하고 배우며,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국립무형유산원 2015a, 4).

1973년부터 문화재청이 시·도와 공동부담으로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⁴⁾ 문화재청은 해당 지정 무형문화재로부터 건립요청이 있으면 그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립·지원해주고 있다. 전수교육관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전수교육실, 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김미경 2012, 33). 문화재청의 2018년 1월 통계를 보면, 전수교육관의 현황은 다음 <표 1>와 같다.

4) 1973년 건립 초기에는 전수회관이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전수회관, 전수관 등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전수교육관으로 칭한다.

〈표 1〉 전수교육관 현황

							+	+		
	153	107	37	9	1	43	107	2	97	193

: 2018 1 31

총 153개의 전수교육관이 있으며, 종목별로 예능 종목은 107개, 기능종목은 37개, 기능 종목과 예능 종목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 전수교육관은 9개이다. 국비의 지원을 받는 곳은 1개, 지방비를 받는 곳은 43개,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받는 곳은 107개, 지방비와 기타로 재원을 충당하는 곳은 2개이다. 대체로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받아 운영한다. 국가무형문화재 97종목, 시·도무형문화재 193종목으로 총 290종목이 입주하고 있다. 현재 전수교육관에 입주해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은 약 73%이며,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약 36%의 종목이 전수교육관에 입주해 있다.

〈표 2〉 전수교육관의 지역별 분포

		4	4	0	2	1	4	0	17	14	10	17	13	22	18	22	5	0	153
		21	3	-	5	1	-	-	5	3	3	5	6	15	5	19	6	-	97
		24	9	-	23	-	19	-	14	11	7	15	12	18	15	21	5	-	193
		45	12	0	28	1	19	0	19	14	10	20	18	33	20	40	11	0	290

: 2018 1 31

〈표 2〉를 보면 전국 곳곳에 전수교육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은 전수교육관이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인 지역성을 잘 살릴 수 있음을 드러낸다. 각 지역의 전승지에 맞추어 전국 곳곳에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이 위치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전수교육관의 경우에는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69개의 조례가 있으며, 대다수 조례에서 규정하는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전수교육관의 기능

1.	.	,
2.		
3.	.	.
4.		
5.		
6.	.	

: (5320
, 2014 1.9,)

조례를 통하여 전수교육관의 주요 목적은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기능은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교육 및 후계자 양성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시, 공연이다.

본 연구에서 전수교육관에 주목한 이유는 전국 곳곳에 있는 전수교육관은 지방 무형문화유산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전수교육관은 전승이 이루어지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이다.

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과 기록관리 현황

1)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유형

뚜렷하게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

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어렵다. 기록학에서는 기록물을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것으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고 정의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48). 해당 정의를 빌려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유형을 활동 또는 업무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형문화유산을 실연하면서 나오는 기록물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실연하기 전 준비되는 무보, 대본 등과 실연할 때 입었던 옷, 악기, 도구 등의 박물 일체도 무형문화유산 기록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연 과정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 텍스트 또한 포함된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행정 업무 시에 나온 기록물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지방자치단체, 전수교육관 등 무형문화유산을 관리 및 보존하는 주체들의 관련 행정 업무 과정 중에 산출되는 기록물이 있다. 예시로 「무형문화재법」에서 언급된 행정 기록물을 들 수 있다. 무형문화재 관련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시에 필요한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인정서 등 다양한 행정 기록물이 있다. 법에 언급된 행정기록물 외에도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행정 업무에서 나오는 기록물들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의 기록물들은 관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이 있다. 논문이나 서적, 보고서 등의 텍스트 기반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연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기록물이 포함된다.

네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록화 사업을 통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기록화 사업을 통해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의 결과물과 기록화 사업 계획부터 실행, 활용 등 사업 과정 중에 생긴 기록물 모두 무형문화유산 기록물로 볼 수 있다.

2)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특징이 있다. 일반 기록물과는 다른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특징을 다뤄보고자 한다.

(1)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다양성

무형문화유산은 소리의 기록이 중요한 종목, 움직임의 기록이 중요한 종목, 제조과정이 중요한 종목 등 종목이 다양하다.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 기록해야하는 항목이 다르다. 또한 실연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와 도구의 제작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제작방법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작 과정에서의 문화를 함께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58). 예시로, 음악 종목의 경우에는 악곡 구성, 악곡의 사설, 악곡의 음악적 특징, 연주 전 과정, 연주형태, 연주악기 구성, 악보, 연주자의 연주기법 등을, 공예분야의 경우에는 제작 도구와 시설, 제작 방법, 재료, 제작의 과정, 완성된 공예품 등을 기록해야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58-67; 국립무형유산원 2014, 97-98).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다양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종목의 특성과 기록해야 하는 항목을 조사·연구하는 사전 작업이 필수적이다.

세 기관의 무형문화유산 매체의 유형은 음성 매체, 사진 매체, 영상 매체, 텍스트 매체가 있다. 이러한 매체의 예시 또한 다양하다.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는 다양한데, 각기 다른 매체로 기록한다. 이러한 매체별 형식의 다양성은 호환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매체 변환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업무효율 향상 및 품질인증, 이용 활성화와 기관 간 원활한 상호협력 등의 이유로 매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청각 기록물 생산 매뉴얼에서는 기록 매체를 정해두고 있다(「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무형유산원훈령 제6호, 2014.12.29., 제정]). 국립무형유산원의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는 신기술의 도입이 느려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표준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시범적용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따라 적합한 기록매체는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이라 할지라도 기록 매체에 따라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기록매체의 다양성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의 구형화·기록매체의 노후화 등 기록의 보존에 위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료 저장과 재생방식이 상이하다면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안정적인 보존 및 다양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마이그레이션이나 에뮬레이션과 같은 보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기록물 활용에 있어 다양한 매체 간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 일반 기록물은 문서나 도서, 시청각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경우 문서 하나만으로, 또는 시청각 자료 하나만으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렵다. 그렇기에 현

행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한 종목을 기록화 할 때, 기록도서, 기록영상, 기록사진을 한 번에 남기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매체간의 유기적 관계를 잘 살릴 수 있는 기록화가 필요하다.

(3) 박물관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특징 중 하나는 박물관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승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시청각 자료가 52%로 가장 높고, 박물관 및 도구가 37%, 서지 자료가 9%로 그 뒤를 이었다(문화재청 2012, 52). 일반 기록물이 텍스트 기반의 서지 자료가 많은 것에 반해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은 박물관의 비중도 높다.

〈그림 2〉 학탈 의상



〈그림 3〉 대목장의 도구



박물관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무형문화유산의 실연 중에 나오는 탈, 악기, 의상과 기능의 도구들이다. 〈그림 2〉는 국가무형문화재인 학연화대합설무의 이흥구 보유자가 직접 제작한 학 탈의상이며, 〈그림 3〉

은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의 고택영 보유자의 손때 묻은 도구다. 이렇듯 무형문화유산을 실현할 때에 나오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의한다. 도구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이기도 하며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승자와 일생을 함께하기도 하며, 스승이 쓰던 것을 물려받기도 하는 등 전승자와 전승공동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도구 자체가 유형문화재가 되기도 한다.⁵⁾ 그렇기에 도구와 도구의 이력에 대한 기록화가 필요하다. 도구 이력에 대한 기록물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된 도구인지 어떤 전승자의 손을 거쳐서 내려왔는지 해당 종목의 역사가 담겨 도구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으며, 기록물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의 이력만 갖춰져도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기반이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박물관의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무형문화유산의 해당 기능을 통해 만들어낸 물품이다. 매듭장의 전승자가 만든 매듭이나, 악기장의 전승자가 만든 악기가 그 예시이다.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이러한 물품에 “전승 공예품”이라는 명칭을 달고 체계적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⁶⁾

무형문화유산의 박물관은 다양하여 형태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가장 적합한 보존 방법이나 다양한 활용 기법 자체를 연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특징은 이와 같이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다양하기에 세부적으로 기록해야하는 것이 다르

-
- 5)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의 경우 그 도구인 물긏과 물질도구가 제주도 민속문화재 10호로 지정되었다.
 - 6) 문화재청은 전승공예품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전승공예품 은행제를 운영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부터 대여, 전시 관리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참조.

다. 두 번째,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매체가 다양하다. 세 번째, 박물관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특징에 유의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3)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 현황

현재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는 크게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기관들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의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1) 문화재청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 문화정책국의 무형문화재과와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다룬다.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법을 운용한다(「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4항 참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1970년에 무형문화재 기록이 의무화되었다.⁷⁾ 그러나 법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인 1965년부터 꼭두각시놀음, 갓 일 등의 기록화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무형문화재 기록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8).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주관해오던 기록화 사업을 1995년부터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관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및 기록도서 발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당시의 기록화 사업은 전통 기·예능의 기법과 연행 행위 전 과정을 수록하는 등 기·예능 보유자의 원형을 기록화하여 보존·전승·학술연

7) 「문화재보호법」 제19조(기록 작성) 4항.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전인 1965년부터 1994년까지는 30~40분의 단편 영상기록물로 제작되었다면, 1995년 이후에는 실연 과정 전체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영상물로 제작되었다(정수진 2006, 469). 영상기록과 함께 기록도서도 발간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록도서인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책자 시리즈가 발간되었다(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5,1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은 2013년 국립무형유산원의 출범과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하였다(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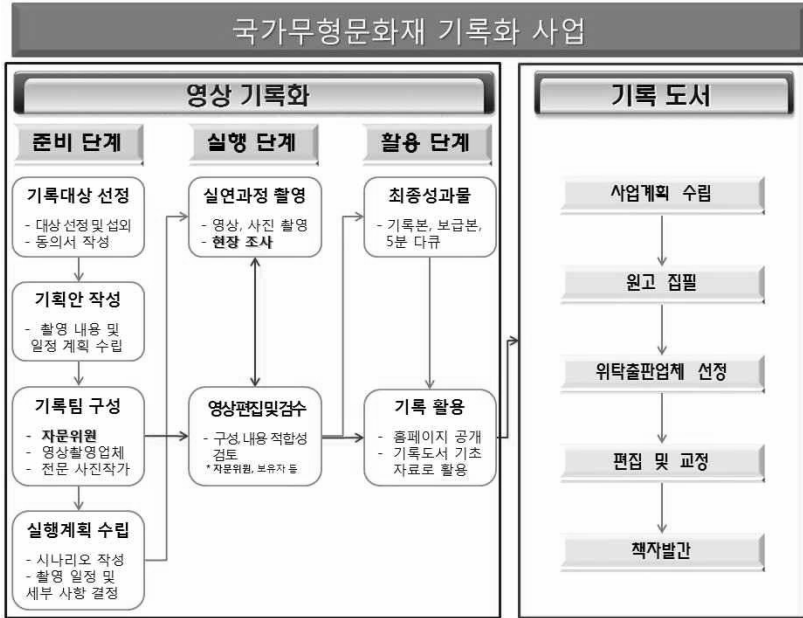
(2)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10월에 전주에 개원하였다.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제 수행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를 도입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한국 무형유산 보호·전승을 하는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전승 활동지원, 보존전승 기반 구축, 공연·전시·교육 및 교류 협력으로 기획운영과, 전승지원과, 조사연구기록과, 무형유산진흥과 총 4개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조사연구기록과에서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도한다. 다음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들이다.

첫 번째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이다. 1995년부터 진행된 문화재연구소에서 이관 받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총 136종목 중 129종목 기록화를 완성하였으며 기록도서 125권을 발간하였다. 결과물도 디지털 변환자료들로 구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프로세스



: , 2017 , 2017, 8 .

(그림 4)와 같은 기록화 사업 프로세스를 통하여 기록본, 보급본, 5분 다큐, 연주본 4가지의 영상이 생산되며,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⁸⁾ 실연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사진도 함께 촬영한다. 또한 영상기록화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기록 도서를 발간한다. 기록도서는 보통 각 종목의 역사와 내용, 보유자, 전승 현황을 담는다.

두 번째는 국가무형문화재 구술채록 사업이다. 2011년부터 국립문화재연

8) 기록본은 분량 제한이 없으며, 기록영상 본래 목적으로 보유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연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말한다. 보급본은 기록본을 30~40분 안팎으로 축약 편집하여 서비스용으로 제작한 기록물을 말한다. 5분 다큐는 보급본보다 더 짧은 3~5분 내외의 다큐 영상으로 전승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기록물이다. 연주본은 보유자의 예술내용에 대한 전체 연주 내용을 담은 기록물을 말한다.

구소의 중요무형문화재 구술채록 사업을 이어 받아 진행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생애와 지식 등을 구술 채록하여 아카이브로 이관하고 구술총서 발간, 웹서비스 콘텐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보유자와 전승단체 소장 자료 수집이다. 2011년, 무형문화재 보유자 유품 수집 및 기록목록 조사를 하여 작고 보유자 등 129명의 이력 및 기초 목록을 작성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승자와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자료를 기증 기탁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보존하고 전시, 공연, 콘텐츠 제작,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국립무형유산원 2015b, 4). 2014년까지 37종목, 1,800여 점을 수증하였고 기증 자료집 제작 배포, 기증 자료 특별 전시회 등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실물자료는 수장고에서 보관 관리하며, 디지털 변환과 데이터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최연규 2014, 108).

그 외에도 2014년부터는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웹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자료실과 수장고 및 문서고를 갖추었으며 매체변환 및 편집 장비를 도입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표준화 방안에도 힘쓰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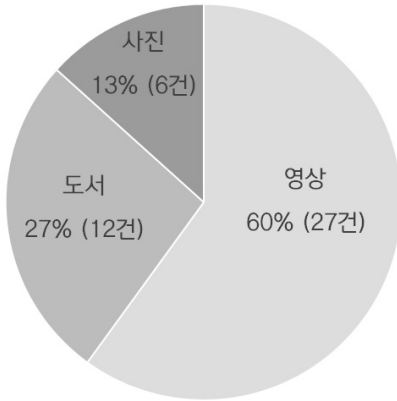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며, 그 부서 내에 시·도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인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7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도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현황의 공식적 통계자료는 없었다.⁹⁾ 정보공개포털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올

9) 2009년에 개척된 문화유산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에 현황 파악 자료가 있었으나, 현황과 많은 차이가 있고 오래된 통계라서 활용할 수 없었다.

라운 32건의 시·도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대해 공개된 공고 내용을 분석해 참고하였다.¹⁰⁾

〈그림 5〉 시·도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생산 유형



	20
	2
	0
,	3
,	4
,	3
	32

지방자치단체의 기록화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과 유사하게 영상이나 도서, 사진을 제작한다. 그 결과물은 〈그림 5〉와 같이 영상 60%(27건), 도서가 27%(12건), 사진은 13%(6건)으로 영상이 제일 많으며 사진이 제일 적다. 도서와 사진을 함께 만드는 경우가 3건, 도서와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4건, 도서, 사진, 영상 3가지 모두를 만드는 경우가 3건 있었다. 도서는 보통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사진은 사진만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는 적으며 보통 영상이나 도서에 삽입되는 사진을 영상, 도서와 함께 납본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상의 경우에는 소스필름(Source Film)과 시나리오 프리뷰 노트와 같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함께 납본 받았다.

10) 32건의 시·도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정보공개포털에는 더 많은 시·도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공고가 있었으나 대부분 비공개라 공개된 일부 공고문만 참고 하였다.

기록화하는 종목은 보통 한 해에 1개에서 2개로,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하거나, 16건이나 24건처럼 한 해에 한꺼번에 많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받아 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원, 지방문화원 등의 비영리 공익 재단이 수행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뉘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로 진행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화순군 1건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기록화 사업은 드물다.

사업명은 ‘기록화 사업’, ‘영상기록물 및 도서 제작’, ‘영상기록물 제작’, ‘기록물 DVD 제작’, ‘기록화 도서 기획 출판’, ‘기록화 사업보고서 출판’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또한 매체별로 형식도 사업별로 각기 달랐다. 예시로 영상의 경우 HDV, DVD, VHS, AVI, BLUE-RAY, 사진의 경우에는 TIFF, JPG 등 사업마다 각기 다른 매체 형식으로 납본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다.¹¹⁾ 2009년 제35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중·일 3국에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의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중국 센터는 교육을, 일본 센터는 위협에 처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사례와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국 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킹을 담당한다(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AP) 2012, 191).

한국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목적은 다음 <표 5>와 같다.

11) 아태무형유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www.ichcap.org>>.

〈표 5〉 한국 아태무형유산 센터의 목적

·	,	,
·	,	()
·	,	,
·	,	,

: () -
 (2)
 7 .

그 중 한국 아태무형문화유산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당사국들의 기록 매뉴얼 개발, 데이터 복원,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아태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 제작, 무형문화유산 관련 데이터의 복원 및 디지털화, 아카이브 구축 지원을 진행하였다(ICHAP 2012, 200).

(5)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 현황 분석

각 기관별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기관 위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화를 행정기관이 주도하기에 무형문화유산의 주체인 전승자나 보유단체의 관점이나 전문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1년에 1종목 내지는 2종목을 계획하여 기록화 한다. 주기적으로 기록화 하는 것이 아니

라 그 무형문화유산의 변화인 전형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행정 기관 하나가 무형문화유산 전부를 다루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개관한 이후,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주도하고 있다. 단적인 예시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작고보유자를 포함하여 58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까지 합치면 10,000여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이 최근 5년간 수집한 대상은 보유자 48명에 불과하다(이재필 2017, 11).

두 번째, 기록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들이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기록물은 체계적 관리에 포함되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도 하지만, 비 전자기록물인 도서와 사진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열람하기에 힘들다. 이 문제점에 관하여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제작에만 치중하여 제작 후에는 캐비닛에 보관되거나 책상에 돌아다님을 지적하였다.¹²⁾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화 사업의 결과물들은 서비스 부분에서 취약하다.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는 일반 이용자도 없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서비스와 홍보가 필요하다.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며, 자료실을 운영하여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이 산재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화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록물이 분산적으로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 기록화 주체들이 각기 기록물을 생산하지만, 종합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다른 조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메타데이터나 매체 형식 또한 각각

12) 2017.08.26. 지방자치단체 소속 A 전수교육관 관계자 인터뷰, 전수교육관에서 60분가량 이루어짐.

다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에도 문제가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기록 주체들은 위에서 언급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지방자치단체, 아태무형유산센터 외에도 국립국악아카이브,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예술디지털 아카이브가 있다. 기관별 자체 지침에 따라 결과물을 생산하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다. 기관 외에도 전승자와 보유단체, 연구자 등 무형문화유산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록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연계되지 않고 관리된다면, 예산 투입이 되는 사업들이 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어느 부분이 결락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현재의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는 비효율적이며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 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배 및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방향

본 연구에서는 전수교육관에 초점을 맞추고,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꼽았다.

1) 행정기관 주도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록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행정기관 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138개,

시·도무형문화재는 548개이다. 그러나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은 1년에 1개에서 2개 종목의 기록화를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합치면 총 686개의 무형문화유산이 있다. 현재의 1년에 1개에서 2개 종목을 기록화하는 방식으로는 수많은 종목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미 기록화를 진행한 종목은 다음 기록화를 진행하기까지 그 시간 간격이 길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기에 지속적인 기록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록화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기록화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수가 많은데 비해, 예산은 유형문화재 지원 예산과 비교하면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에서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77%,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은 5%에 그쳤다. 유형문화재의 수가 무형문화재의 수보다 많음을 고려하여도 그 예산은 적다(뉴스1 2017). 또한 보유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92%로 보유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전승자 부재 종목 등은 전승단절의 우려가 있다. 수많은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비해, 예산은 적고, 시간은 많지 않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153개의 전수교육관이 다루는 289종목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가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종목의 수는 보통 1~2개이다. 그 수가 적어서 종목별로 지속적이며,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화를 할 수 있다. 전수교육관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록화를 진행해야한다.

2) 전승자·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이나 공동체에 의해 전승된다. 무형문화유산을 형성

하는데 있어 특정 지역, 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는 중요하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특정 지역,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지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느끼지 않거나, 전승 맥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현상은 무형문화유산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언급한다(송준 2012, 122). 또한 계약국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활동에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¹³⁾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 있어서도 주체인 전승자나 보유단체는 빠질 수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보유하고 전수하는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에서 기록화 할 뿐만 아니라 기록화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계획하고 진행을 주도한다. 기록화에 있어 전승자들이나 보유단체는 기획 단계에서 일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기록화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승자들과 보유단체는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서 객체일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들의 전문성을 기록화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기록물을 수집하기도 하지만, 기관의 수집정책에 따라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관이 채택한 관리 방식에 따라 기록을 재정의, 재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관점이 반영되어,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온전하게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5조 -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Article 15 -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동시에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가 이루어져서 양쪽의 관점을 담은 입체적이고 다원화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단위에서 가능하다. 전수교육관에는 입주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전승자와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수교육관 단위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에서는 입주한 종목의 전승자와 보유단체가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며, 전승자와 보유단체가 직접 기록화에 참여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기록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기록화

무형문화유산은 전승자, 개인의 행위만이 아니라, 집단의 지혜와 창조의 산물이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유산 공동체’를 무형문화유산의 실행과 전승 또는 동참에 기인한 어떤 공유하는 역사적 관계로부터 발생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ACCU) 2006, 17). 무형문화유산 공동체는 일시적, 단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공동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함께 생활하기도 하면서 밀도 높은 공동체를 형성한다.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형성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기록화는 전승자와 보유단체가 중심이 되기에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는 깊이 있는 기록화가 가능하다. 단편적으로 종목의 영상을 찍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승 계보 등과 같은 공동체의 역사와 이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역사 등의 풍부한 맥락정보를 담아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록화 과정 중에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자존감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다.¹⁴⁾ 기록화 과정 중에 전승자와 보유단체에게 무형문

화유산의 인식을 제고(提高)하여 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며,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4)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리는 기록화

전수교육관에서의 기록화는 무형문화유산 특성을 반영한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전승해야 보존이 가능하다. 전수교육관은 실질적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전수교육관의 주 기능인 교육과 전승의 과정 중에 나오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지원하며,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의 체계화·자료화를 가능하게 한다. 폐쇄적인 전승 구조에서 비롯된 전승체계의 순환의 정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급작스럽게 전승이 끊긴 종목의 경우 기록물을 기반으로 전승을 이어갈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담아내어 무형문화유산이 변화나 변형을 보이기 이전의 원형(原型)을 유지하고, 변화되어 파생된 무형문화유산 또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수교육관 내에는 보통 1~2개의 종목이 입주하여 있다. 적은 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기록화를 진행하기에 주기적인 기록화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무형문화유산의 변화 과정을 기록에 담을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무형문화유산의 특성 중 하나인 지역성은 이를 말한다. 전수교육관은 지역 곳곳에 있다. 그렇기에 무형문화유산의 지역성을 기록화 하는데 있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전승성과 지역성, 변이성 이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1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일원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상세목록과정을 통해 전승자와 전승공동체의 자존감(self-respect)이 강화되고 인간의 창조성도 향상된다.”고 언급한다. 상세목록과정은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록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반영하는 기록화로 나아가야 한다.

5)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록화

무형문화유산은 생활 속에 녹아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수교육관이 있다. 전수교육관은 지역 곳곳에 위치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교육,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지역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역할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중요성 및 역할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다(문화재청 2017, 46).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전수교육관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로 나아갈 수 있다.

전수교육관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통하여 획득한 기록물을 서비스하거나 콘텐츠화하여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전시, 공연에 활용할 수 있다. 활용을 통해 전수교육관 기관 자체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기록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승자가 전수교육을 통해 보존·전승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매체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다. 현행의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두 가지 방법 중 전자인 살아있는 형태의 보존 방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까닭에, 무형문화재의 기록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왔

다(정수진 2006, 464). 그렇지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전승자의 전수교육만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방법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해야하며,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하였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수교육관 현장에 대한 상세한 사례분석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밑거름으로 전수교육관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진척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문화재청이 발표한 ‘2018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흥계획’을 통해 전수교육관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문화 거점화를 추진하고, 국공립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 교육사를¹⁵⁾ 1명 이상 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문화재청 2018b, 10).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1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0호, 2017.3.21., 일부개정]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9.11.09. “농악무, 중국이 먼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91737475&code=960201, (접속일자. 2017.08.16).
- 국립국악원. 2016. 『국악아카이브 연구기획 학술세미나 자료집: 디지털 시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치 창조』.
- 국립무형유산원. 2014.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지침서』.
- 국립무형유산원. 2015a. 『함께 즐겨요! 무형유산 배움터』.
- 국립무형유산원. 2015b. 『2015년 무형유산 자료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빙 계획 보고서』.
- 국립무형유산원. 2017.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기본계획안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 보고서』.
- 권소현, 김익한. 2010.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173-214.
- 김미경. 2012. 『무형문화재 정책 및 운영의 발전방안 연구: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문화예술행정전공 박사논문.
- 뉴스1. 2017.10.16. “보유자 없고 예산도 부족… 무형문화재 25% 단절 위기”.(접속일자. 2017.12.16). <http://news1.kr/articles/?3124619>.
- 문화재청. 2012.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운영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재청. 2017.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 문화재청. 2018a. 『2018년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 문화재청. 2018b. 『국가무형문화재 통계자료(2018.1.31)』.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학회. 2009.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백주현, 김순희. 2010a. 시·도 지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77-97.
- 백주현, 김순희. 2010b. 대전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방안 연구. 『충청문화연구』, 3, 143-174.
- 송준. 2012. 무형문화유산정책과 NGO의 역할. 『남도민속연구』, 제24집, 109-130.
- 아태무형유산센터, 문화재청. 2010.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AP). 2012. 『2011년 전문가회의 보고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구축과 공유』.
- 이재필. 2010. 무형문화재 기록 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 19, 141-158.
- 이재필. 2017.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 방안. 『무형유산』, 제2호, 5-20.
- 임예림. 2011.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및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장혁. 2008.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과 기록물의 활용: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5권, 121-142.
- 장하나. 2015. 『은산별신제 기록화 방안』.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 2006. 원형의 기록화. 기록의 원형화: 무형문화재의 기록. 『한국민속학』, 44, 463-490.
- 최숙경. 2010. 무형문화재 매체별 기록방법. 『인문콘텐츠』, 19, 159-175.
- 최연규. 2014. 국립무형유산원 소개. 『기록인』, 29, 104-111.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희정, 오효정, 김태영, 김용. 2016.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95-134.
-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ACCU). 2006.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Report』. Tokyo, Japan.

〈참고 사이트〉

아태무형유산센터 홈페이지. 〈<http://www.ichcap.org>〉.